

國民與望에 逆行하는 搜查權 調整案 發議

- 김재원 의원, 檢察搜查權 強化案 제출 -

최근 김재원 의원(한나라당, 검사 출신, 경북군위·의성·청송 初選)이 현행보다 검찰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刑罰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임을 명시하는 한편, 현행 경우만까지로 되어 있는 사법경찰관을 치안감 지방경찰청장은 물론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까지로 확대 지정했다.

또한 교통사고, 폭행, 상해, 절도 등 민생 치안범죄의 수사는 검사의 별도 지휘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독자 수사개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여 사실상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찰에 범죄발생보고 및 정보보고의무의 부과, 검사장이 직접 경찰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징계위원회는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검사가 경찰수사사무 지도·점검권에 따라 경찰서에 비치된 수사사무 관련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이에 응하도록 했다.

먼저, 이번 김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나,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검사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고, 검·경간 상하관계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즉,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임을 명문으로 선언하는 한편 검사의 자의적인 지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사법경찰의 수사개시, 진행 가능여부를 종속시키고 있는 점을 볼때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고착시키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대폭 강화·실질화로 검사의 지휘 대상인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경찰청장까지로 확대하고,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존치 명시하는 한편, 소위 민생치안범죄의 경우에도 검사의 별도 지휘가 없는 경우에만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개시·진행할 수 있

도록 했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이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므로 독자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수사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송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경찰의 독자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검사의 정보독점 권한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했던 사법경찰관집무규칙(법무부령)상의 각종 정보독점을 위한 권한을 법률로 격상하고, 검사가 지정하는 중요범죄 발생시 경찰의 발생보고 의무 뿐만아니라 집회·시위 등 공안 정보에 대한 사법경찰의 보고의무까지 도입함으로써 현행보다 검사의 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 및 독점권한이 강화됨으로써, 형사절차상 검사 권한의 비대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검사와 사법경찰간의 상명하복관계 담보장치 강화이다. 이는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감찰청법에 산재되어 있는 체임·징계 요구권을 강화하여, 검사장

이 직접 경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검사의 군림, 사법경찰의 예속현상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검사의 경찰수사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의 명문화이다. 이는 현행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각종 수사서류에 대한 감찰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법경찰관이 취급하는 서류일체에 대한 검사의 감찰을 규정함으로써 경찰 수사사무 전체에 대한 종속 체제 가속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경우회도 이번 김재원 의원의 검찰수사권 강화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국민의 여망에 역행하는 감찰권 강화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법 추진의 중단을 요청했다.

그간 경우회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불거진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더 늦출 수는 없다』면서 『지난 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 협력적인 검경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경우회 관계자는 『이번에 김재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나열하고 있으나 요지는 견제와 균형은 고사하고 검사가 경찰청장까지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경간의 상명하복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아니라, 이인기 의원(한나라당)과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며, 사법개혁과 수사구조개혁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관련기사 2면 하단〉

警察搜查權은 國民人權의 원상회복

— 백 형 조 (경찰학 박사, 원광대 교수)

1. 1년간 한 피고인을 239회나 소환

몇 년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한 기업체의 간부를 수사하면서 1년여 동안에 무려 239차례나 소환을 한 것에 대하여 크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문의 사실이 지적인 것처럼, 과잉소환은 크나큰 인권침해이다. 형사사건의 97% 이상을 담당수사하는 한국경찰 60년 역사에서 이런 엄청난 인권침해 사실은 단 한번도 없었다. 필자는 아직까지 세계의 선진국에서도 이런 예는 찾지 못하였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문제가 공복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논의되어 오는 동안에, 검찰이 시종일관 이를 단호히 반대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법률지식(자질)에 격차가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일류대학 출신에 사법시험 합격자이지만, 경찰은 어느 것도 경찰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인권의 존중이나, 침해나 하는 문제는 법률 지식 수준이 높으나 낮은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수사관의 인성(인간성)과 정치권력 체제에 달렸다. 그것은 유식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덜 유식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와도 같다.

인류역사상 가장 인권 유린이 극심한 체제는 독재·전제·전제주의 국가이었다. 나치스 독일, 파쇼 이태리, 군국주의 일본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파쇼체제에 빌붙어서 이를 합리화 해주고, 탄압기술을 제공했던 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출세지향의 일부 대학 지식인들이었다.

이른바 5공시대의 집권 지배집단을 향간에서는 “육법당”이라고 하였다. 인권유린이 가장 많았던 이 시대의 권력주체 집단을 육법당이라고 호칭하였는데, 이것은 「정치권인 집단과 법률지식 집단」의 합성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권=법률지식”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필자는 그 정반대라는 사실을 인류역사를 통하여 확신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 한 사람을 1년동안 이 백사십회나 불러다니게 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법률지식이 모자란 경찰의 소행이 아니라 법지식이 풍부하다는 검찰의 소행이었다. 그외에도 백수십번씩 소환 조사당한 사례는 많다.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 흔히 있는 말로서 “판사는 재판을 자꾸 미뤄서 조지고, 검사는 자꾸 불러서 조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속재판의 지연과 소환조사의 남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정신적 침해가 보다 큰 인권침해

우리가 인권침해라 할 때에는 흔히 고문·폭행·가혹행위등 육체적 피해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침해는 정신적·영적 고문이라고 생각한다.

〈2면에 계속〉

2면 / 경찰청장에 이택순 경기청장 내정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 주관 '의성군민 초청 강연회' 성황

최근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이하 사개연)가 주최하는 경북 의성군민 초청 강연회가 의성 및 인근 군위, 청송지역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등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날 수사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강연회에서 사개연 전

은재 정책위원장은, 국가경쟁시스템 개혁의 일환인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을 상호 견제와 경쟁관계로 재정립하여 이 나라의 성역을 없애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중대 과제를 역설해 참석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 위원장은 「인권을 더 유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주장, 경찰에 수사권

을 부여할 경우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하며 『검찰이 이전 경찰 총수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라며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전 위원장의 강연은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약 10회 이상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상당수 참석자들이 김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 발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질타했다.

2006년을 警友會 跳躍의 해로
- 새해 맞아 현충원 참배하고 組織發展 결의 -

재향경우회는 丙戌年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후 금년도 시무식을 갖고 올 한해를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하고 조직발전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1시 구홍일 회장을 비롯한 원로회원, 중앙회 부회장단 및 임직원, 수도권 각 급회 회장단, 기능회 회장단 등 100여명은 집례관의 안내로 현충탑을 찾아 헌화 및 분향하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경찰총훈탑으로 이동, 순직경찰관들에게도 헌화 분향하고 故人들의 넋을 추모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산화한 동지들에 대한 禮를 표했다. 한편 구홍일 경우회장은 이날 오찬장에서 가진 始務式에서 지난해 중앙회를 중구 신당동으로 이전한 것을 비롯,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현직 후배들에 대한 측면 지원 등 활동실적을 언급하면서 「丙戌年을 경우회 발전을 위한 도약의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 謹 賀 新 年 —

지난 한해 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120만 警友가족 여러분의 萬福을 기원드립니다.

중앙회장
부 회 장
부 회 장
부 회 장
부 회 장
사무총장
이 사
이 사
이 사

具 趙 金 徐 金 丘 玄 文 李 金 申
弘 石 今 廷 本 在 誠 在 賢 乙 載
壹 奉 道 玉 植 台 一 珍 淳 魯 喆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서울회장
부산회장
대구회장

金 孫 李 曹 高 崔 金 權 朴 金
南 在 琪 廷 石 承 炳 光 寧 正 燦
暫 鉉 錫 昱 鉉 奎 一 雄 國 浩 昇

인천회장
광주회장
대전·충남회장
울산회장
경기회장
강원회장
충북회장
전북회장
전남회장
경북회장
경남회장

金 李 張 金 李 崔 李 鄭 吳 李 金
萬 莊 錫 正 東 仁 載 正 南 潤 祥
浩 吾 照 源 教 哲 惠 源 澤 熙 連

제주회장
해경회장
참전회장
기능회장
여경회장
충무기획처장
재정관리처장
홍보처장
홍보부장

金 吳 文 申 李 李 金 閔 安
英 龍 鶴 東 舟 圭 庚 五
仲 煥 東 浩 子 峻 鎮 佑 模

大韓民國在郷警友會